



넥서스 리서치 2026\_103 · NR-2026-103 · 국민 금융생활 연구보고서

# 배당금 청구권은 5년, 미수령 주식에는 같은 시효가 없다

명의개서대행회사 세 곳이 맡은 주식과 배당금의 청구 기한과 조회처

종이 주권을 직접 받았던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이 있다. 이 몫은 주주명부를 대신 관리하는 곳(명의개서대행회사)이 맡아 둡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은 미수령 주식 조회처로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세 곳을 안내한다. 세 곳을 모두 조회하지 않으면 자기 몫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다.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이 기한은 법률인 상법이 정한다. 같은 배당금이라도 예탁결제원이 10년 넘게 맡은 실기주과실은 공적 기구로 옮긴 뒤에도 청구하면 돌려받다. 맡은 곳에 따라 기한 뒤의 길이 갈립니다.

연구소는 시효가 끝난 배당금도 공적 기구로 보내고, 기한 전에 주주에게 알리도록 법률을 고치자고 제안한다. 그 전까지는 주주가 세 곳을 직접 조회해야 한다.

##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분량

본문 13쪽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세 줄 요약

### 무엇을 물었나

받을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은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 무엇을 알아냈나

종이 주권을 가졌던 주주의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은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세 곳에 있다. 배당금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실기주과실은 공적 기구로 옮긴 뒤에도 돌려받다.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에 그런 길을 둔 법률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금융감독원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미수령주식 조회처인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세 곳을 모두 조회한다.

### 한눈에

5년.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이다. 법률인 상법이 정한다. 조문은 이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는다(2026년 9월 시행 조문 기준).

## 차례

|           |                                                         |   |
|-----------|---------------------------------------------------------|---|
| <b>1장</b> | 배당금과 주식은 같은 미수령 재산이 아니다5년 기한은 주식이 아니라 배당금에 걸려 있다        | 3 |
| <b>2장</b> | 미수령 재산은 배당금·주식·실기주과실로 나뉜다미수령 주식의 97.8%는 예탁결제원이 맡고 있다    | 4 |
| <b>3장</b> | 배당금 청구권에만 상법상 5년 시효가 붙는다맡은 곳에 따라 같은 배당금의 기한 뒤가 갈린다      | 5 |
| <b>4장</b> | 보유형태와 연락 가능성이 회수 경로를 가른다보관기관과 주주명부 상태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달라진다   | 8 |
| <b>5장</b> | 시효 완성 뒤 귀속액과 사전통지 실적은 공개되지 않는다기한 전 알림은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 8 |
| <b>6장</b> | 조회·주소정비·시효통지를 한 절차로 묶는다시효 뒤 돈이 갈 곳은 법률로만 바꿀 수 있다        | 9 |

## 1장 · 배당금과 주식은 같은 미수령 재산이 아니다

5년 기한은 주식이 아니라 배당금에 걸려 있다

주식을 사면 대개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둡니다. 배당금도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종이 주권을 직접 받아 집에 둔 주주가 있다. 이런 주주의 주식과 배당금은 주주명부를 대신 관리하는 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가 맡아 둡니다. 주주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쌓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세 대형회사의 국회 제출자료를 정리한 값으로는 2025년 미수령 주식이 3,434만주이다. 이 주식을 가진 주주 수는 확인하지 못해 한 사람당 몇 주인지는 알 수 없다.<sup>1</sup>

### 이 보고서는 어디에, 얼마나, 언제까지를 차례로 묻다

질문은 하나이다. 받을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은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고, 언제까지 찾을 수 있습니까. 2장이 얼마나를, 3장이 언제까지와 그 까닭을, 5장이 아직 모르는 것을 다룹니다.

이 질문이 지금 필요한 까닭은 기한이다.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 기한은 법률인 상법이 정한다.<sup>2</sup> 같은 국회 제출자료로 보면 세 곳 주주명부에 오른 70세 이상 주주는 2025년 말 431만8,958명이다.<sup>3</sup> 이 가운데 몇 명이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이 그 주식을 알기 어렵고, 그사이 5년이 지나갈 수 있다.

**5년 기한은 배당금에 걸려 있다.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 명의개서대행회사

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배당금을 나눠 주는 곳이다. 이 보고서는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세 곳을 다룬다.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본인 이름으로 미수령 주식 있는지 세 곳을 모두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파인 >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 미수령주식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증권계좌로만 거래했다면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를 먼저 봅니다.

## 2장 · 미수령 재산은 배당금·주식· 실기주과실로 나뉜다

미수령 주식의 97.8%는 예탁결제원이 맡고 있다

이 장은 숫자만 적다.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6년 7월 낸 글에 실린  
명의개서대행회사 세 곳의 국회 제출자료이다. 원 제출 문서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와 값이 맞는 2025년 값만 적었다.<sup>4</sup>

**2025년 미수령 주식  
3,434만주 가운데 97.8%를  
예탁결제원이 맡고 있다.**

2025년 세 곳이 맡은 미수령 주식은 3,434만687주이다. 예탁결제원이  
3,356만9,000주로 97.8%를 맡다. 하나은행은 46만6,171주로 1.4%,  
국민은행은 30만5,516주로 0.9%이다. 백 주 가운데 거의 아흔여덟 주가  
예탁결제원에 있다.

### <표 1> 미수령 주식은 대부분 예탁결제원이 맡고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 세 곳 · 2025년

(단위: 주, %)

| 대행회사  | 미수령 주식     | 몫     |
|-------|------------|-------|
| 예탁결제원 | 33,569,000 | 97.8  |
| 하나은행  | 466,171    | 1.4   |
| 국민은행  | 305,516    | 0.9   |
| 합계    | 34,340,687 | 100.0 |

주: 1) 예탁결제원은 12월 말, 국민은행·하나은행은 10월 말 기준이다. 2) 자본시장연구원이 국회 제출자료를 정리한 값이고, 이데일리  
보도의 대행회사별 값과 천 주 단위까지 맞는다. 3) 몫은 연구소가 계산했고 반올림 때문에 합이 100이 아닐 수 있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1960년대에 머문 투자자 권리 보호」, 자본시장포커스 2026-16호, 2026, 표1을 일부 수정. 이데일리(2026.2.9).

#### 비교축 · 인접 제도

금융권 전체와 견주면 이 돈의 자리가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8일, 2025년 말 금융권 휴면자산이 1조5,019억원이라고 밝혔다.<sup>5</sup> 이 가운데 증권이 3,762억원으로 25.0%, 네 원 가운데 한 원꼴이다. 증권 뒤편에는 오래 거래가 없는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배당금이 함께 들어 있다. 그래서 세 대행회사 값과 빼거나 나누지 않았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도 있다. 증권회사에서 종이 주권을 찾아간 뒤 자기 이름으로 바꿔 올리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붙은 배당금과 주식이다. 2025년 6월 말 431억8,200만원, 주식 204만주이다. 2024년 말에는 421억6,000만원, 203만주였다. 이 2024년 말 값에는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249억5,000만원이 들어 있다.<sup>6</sup>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집이나 부모 댁에 종이 주권이 남아 있는지 찾아봅니다.

확인하는 곳 · 주권에 적힌 발행회사 이름과 주주 이름. 상장 주식의 종이 주권은 2019년 9월 16일 효력을 잃었다. 예탁하지 않은 뒤편은 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 주식은 이 장의 통계에 들어 있지 않는다.

## 3장 · 배당금 청구권에만 상법상 5년 시효가 붙는다

맡은 곳에 따라 같은 배당금의 기한 뒤가 갈린다

#### 상법은 청구권의 시효만 정하고 시효 뒤 돈의 귀속은 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시효 완성 뒤 돈의 귀속이나 회계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언론 보도는 대행회사가 지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실무를 전한다.<sup>7</sup> 법률상 소멸시효와 업계의 자금처리를 구분해야 한다. 연구소는 이 구조에서

같은 배당금이라도  
예탁결제원이 실기주 뒤편으로  
맡은 돈은 공적 기구로 옮긴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발행회사와 대행회사에 시효 완성 전 통지 유인이 충분한지 따로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주주 쪽에서는 기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 있다. 기한을 미리 알려 주는 규칙은 5장에서 봅니다.

## 전자증권 전환은 주식을 특별계좌에 모았지만 배당금 기한은 건드리지 않았다

둘째,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지 만들었는지 봅니다. 2019년 9월 16일 상장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바뀌면서 종이 주권은 효력을 잃었다.<sup>8</sup> 주주가 계좌를 알리지 않은 주식은 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올랐다. 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정한 방식이다. 특별계좌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전환으로 주식은 세 곳에 모였지만 배당금의 5년 기한은 그대로 남았다. 종이 주권을 잃어버린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부터 시작한다. 법원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친 뒤 재발행을 신청해야 권리를 되찾는다.<sup>9</sup> 주식은 되찾는 길이 멀고, 배당금은 찾기 쉬워도 기한이 짧다.

실기주는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 올리지 않은 주식이라 그 배당금은 예탁결제원이 받아 관리한다. 종이 주권을 직접 가졌던 주주의 배당금은 대행회사가 맡는다.

## 법률은 같은 배당금에 이미 다른 길을 하나 열어 두었다

셋째,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와 청구 기한을 정한 지금의 조항은 1984년 상법에 들어왔다.<sup>10</sup> 예탁결제원의 찾아주기 캠페인은 시작 15년 만인 2024년에 누적 실적 1조원을 넘었다.<sup>11</sup> 그래도 2025년에 3,434만주가 남아 있다. 연구소는 캠페인이 연락이 닿는 주주를 찾는 일이어서 기한이 끝나는 배당금의 흐름은 바꾸지 못했다고 봅니다.

실기주과실에는 법률이 다른 길을 열었다. 서민금융법은 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맡은 실기주과실 가운데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게 했다. 휴면예금과 같은 방식이다. 출연한 뒤에도 원래 주인이 청구하면 돌려줍니다. 청구 기한을 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sup>12</sup>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한 해 휴면예금을 원래 주인에게 3,732억원, 65만8,000건 돌려줬다. 건당 약 57만원이다.<sup>13</sup>

## <표 2> 같은 배당금이라도 맡은 곳에 따라 기한 뒤 가는 곳이 다르다

청구 기한과 기한 뒤 처리 · 2026년 9월 기준

| 구분           | 청구 기한              | 기한 뒤 가는 곳 | 그 뒤 다시 찾기 | 근거 규범              |
|--------------|--------------------|-----------|-----------|--------------------|
|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 | 5년(조문에 기산점 없음)     | 발행회사(실무)  | 확인하지 못함   | 법률(상법), 그 뒤 처리는 실무 |
| 실기주과실        | 10년 넘게 맡은 돈은 출연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 청구하면 지급   | 법률(서민금융법)          |
| 휴면예금         | 5년(상거래로 생긴 돈)      | 서민금융진흥원   | 청구하면 지급   | 법률(상법·서민금융법)       |

주: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이 발행회사로 가는 것은 자본시장연구원과 언론 보도가 전한 실무다. 실기주과실의 청구 기한 조항과, 발행회사로 넘어간 배당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상법 제46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상법 제64조·서민금융법(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자본시장연구원(2026), 이데일리(2026.2.9).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지금 규칙은 법률이 기한을 정하고 그 뒤는 회사 쪽 실무가 정한다

넷째, 지금 적용되는 규칙이다. 배당금의 5년 기한은 법률인 상법이 정한다. 상거래로 생긴 돈에 두는 일반 기한과 같은 길이다.<sup>14</sup> 조문은 이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지 않는다. 지급일부터 센다는 것은 실무 서술이고, 기한 뒤 배당금이 발행회사로 가는 것도 실무이다. 그 근거가 되는 정관 조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계좌는 전자증권법이, 실기주과실의 출연은 서민금융법이 정하며 둘 다 법률이다. 금융당국이 2026년 9월 내놓은 휴면자산 관리 강화는 업권 협회의 모범규준, 곧 자율규제를 고치는 방식이다.<sup>15</sup>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종이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주주명부 열람부터 시작하는 절차를 대행회사에 물어봅니다.

확인하는 곳 ·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가운데 그 회사의 명부를 맡은 곳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종이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증권계좌로 옮겼다면 이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 4장 · 보유형태와 연락 가능성이 회수 경로를 가른다

같은 주주라도 재산을 맡은 곳과 명부의 주소가 다르면 되찾는 절차가 달라진다

회수 경로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재산의 종류다.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은  
상법상 청구권이고, 특별계좌의 주식은 주식 자체이며,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배당금·무상주식 등이다. 5년 소멸시효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적용될 뿐 주식 자체가 5년 뒤 없어지는 규칙은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명부와 연락정보다. 증권계좌에 정상 등록된 주주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 종이 주권이나 특별계좌에 남은  
주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주주명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오래되면  
통지나 캠페인이 있어도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수 경로

#### 재산의 이름보다 현재 보관기관과 명부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곳      | 핵심 기한                      | 다음 절차                      |
|------------|---------------|----------------------------|----------------------------|
| 미수령<br>배당금 | 명의개서대행회사      | 청구권 5년                     | 배당 연도·<br>지급일·시효<br>기산점 확인 |
| 특별계좌<br>주식 | 발행회사·<br>대행회사 | 주식 자체에<br>같은 5년 시효<br>없음   | 본인확인·<br>계좌이전 또는<br>권리회복   |
| 실기주과실      | 예탁결제원         | 출연 뒤에도<br>원권리자 지급<br>경로 존재 | 보유내역과 과실<br>조회             |

**자료:** 상법 제464조의2, 전자증권법, 서민금융법. 재산별 법적 성격을 연구소가  
구분했다.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회사명·배당 연도·보유형태를 적은 뒤 어느 기관이 주주명부와 재산을 맡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발행회사 공시,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결제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미수령 주식 자체가 배당금과 같이 5년 뒤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5장 · 시효 완성 뒤 귀속액과 사전통지 실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한 전 알림은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 기한 전에 알려 주는 일은 아직 제안 단계이다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의 주인에게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시효 전 통지를 의무로 하자고 제안했다. 오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에게 발행회사와 대행회사가 주기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sup>16</sup> 알림이 없으면 주주는 기한이 지난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된다.

기한 전 알림은 아직 제안 단계에 있다. 이미 발행회사로 넘어간 돈이 모두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새 공개 제도가 이 돈을 담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2027년 3월 말부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도된 대상 업권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다.<sup>17</sup> 대행회사가 맡은 미수령 배당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 돈은 새 공개 제도 밖에 남다.

### 종이 주권을 잃어버린 소액 주주에게는 법원 절차가 남다

종이 주권을 잃어버린 주주는 법원에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야 특별계좌의 주식을 되찾다. 주식 값이 작으면 이 절차에 드는 시간과 품이 주식 값보다 클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소액 주식의 간이 권리회복 특례를 제안했다. 공시최고를 신청인 주소지 법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sup>18</sup> 연구소는 두 방안 모두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이미 넘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5년이 지나 발행회사로 넘어간 배당금이 모두 얼마인지 적은 공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수령 주식을 가진 주주가 몇 명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대행회사가 해마다 새로 맡는 배당금의 크기도 두 곳 이상의 자료로 맞춰 보지 못했다.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주요 항목은 각주에 모았다.<sup>19</sup>

###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조회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곧바로 청구하고,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 배당금을 맡은 대행회사에 묻다.**

확인하는 곳 · 조회 결과에 나오는 배당 연도, 그 배당금을 맡은 대행회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실기주과실은 공적 기구로 옮긴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 배당금만큼 급하지 않는다.

## 6장 · 조회·주소정비·시효통지를 한 절차로 묶는다

시효 뒤 돈이 갈 곳은 법률로만 바꿀 수 있다

대안은 다섯이다. 하나는 지금 규칙대로 주주가 조회하는 길이고, 하나는 자율규제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길이다. 나머지 셋은 법률을 고치는 길이다. 통지를 의무화하거나, 시효 뒤 돈을 공적 기구로 보내거나, 종이 주권의 권리회복 절차를 줄인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라는 뜻은 담지 않았다.

### <표 3> 기한 자체를 없애는 대안은 모두 법률 개정이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지금 상태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층위    | 지금 상태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① 주주가 세 곳을 직접 조회        | 주주·상속인     | 법률(상법·전자증권법) | 시행 중          | 기한 전에 찾으려면 받는다 / 모르는 사람 뭇은 남는다  |
| ② 휴면자산 공개에 대행회사 보관분을 넣기 | 업권 협회·금융회사 | 자율규제(모범규준)   | 2026년 말 개정 예정 | 규모가 드러난다 / 돌려받을 기한은 그대로다        |
| ③ 기한 전 통지 의무화           | 발행회사·대행회사  | 법률(개정 필요)    | 제안 단계         | 기한을 알게 된다 / 연락이 끊긴 주주에게는 닿지 않는다 |

| 대안                     | 누가 한다        | 근거 규범의 총위          | 지금 상태                 |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
|------------------------|--------------|--------------------|-----------------------|-----------------------------------------|
| ④ 시효 끝난 배당금을<br>공적 기구로 | 국회·<br>금융위원회 | 법률(서민금융법<br>대상 확대) | 제안 단계,<br>실기주과실은 시행 중 |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회사로<br>가던 돈의 행방이 바뀐다 |
| ⑤ 소액 종이 주권의<br>간이 권리회복 | 국회·법원        | 법률(개정 필요)          | 제안 단계                 | 되찾는 절차가 줄어든다 / 소액의<br>기준을 정해야 한다        |

주: ②의 모범규준 개정 일정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2차 내용이고, 대행회사 보관분을 넣는 것은 연구소의 제안이다. ③~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제안이고 총위는 연구소가 판단했다. 총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2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6, 보도 경유), 서민금융법(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없는 사람이 할 일

조회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을 맡은 대행회사에 바로 청구한다.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그때 함께 묻다. 주식이 나오면 증권계좌로 옮겨 둡니다. 그 주식에서도 해마다 새 배당금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모의 몫을 함께 조회하면 상속 때 빠뜨리는 몫을 줄일 수 있다.

**시효가 끝난 배당금을  
실기주과실처럼 공적 기구로  
보내면 기한이 사라진다.  
이것은 법률을 고쳐야 하는  
일이다.**

## 금융회사가 할 일

대행회사 세 곳은 5년 기한이 1년 남은 배당금을 따로 추려 명부의 주소로 알릴 수 있다. 법률 의무가 아니어도 이것을 막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업권 협회는 2026년 말 모범규준을 고칠 때 대행회사가 맡은 미수령 배당금을 공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가 기한을 넘겨 발행회사로 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자율규제 총위라 법률 개정보다 빨리 할 수 있다.

##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시효가 끝난 배당금이 가는 곳을 법률로 바꿀 수 있다. 선례가 있다. 서민금융법은 이미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출연한 뒤에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 이 범위를 대행회사가 맡은 배당금까지 넓히면 맡은 곳에 따라 기한 뒤가 갈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기한 전 통지 의무와 기한을 세는 시점도 같은 개정에 담을 수 있다. 연구소는 걸린 돈의 크기보다 규칙을 맞추는 일이 먼저라고 봅니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업권 협회의 모범규준 개정안이 2026년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그 개정안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공개 대상에 넣는지가 첫 관찰 지점이다. 넣으면 2027년 3월 말 첫 공개에서 이 돈의 규모가 회사별로 나옵니다. 넣지 않으면 이 돈은 첫 공개에서 빠집니다.

## 오늘 할 수 있는 것

- 1 미수령주식 조회처로 들어가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세 곳을 모두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파인 >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 미수령주식

- 2 증권회사에서 종이 주권을 찾아간 적이 있다면 실기주과실도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실기주과실(예탁결제원)

- 3 오래 쓰지 않은 증권계좌가 있다면 휴면성 증권계좌를 조회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의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안내

---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최근에 쓴 증권계좌만 있고 종이 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세 곳 조회는 급하지 않는다.

## APPENDIX A

### 부록 가 · 용어 풀이

#### 명의개서대행회사

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배당금을 나눠 주는 곳. 이 보고서는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을 다룬다.

#### 특별계좌

전자증권 전환 때 주주가 증권계좌를 알리지 않은 주식을 올려 둔 대행회사의 계좌. 이 계좌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한다.

#### 실기주 · 실기주과실

증권회사에서 종이 주권을 찾아간 뒤 자기 이름으로 바꿔 올리지 않은 주식이 실기주다. 그 주식에 붙은 배당금과 주식이 실기주과실이다.

####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배당금은 5년이다.

#### 휴면성 증권계좌

최근 여섯 달 동안 거래가 없고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 등. 금융투자협회가 조회처를 안내한다.

#### 공시최고 · 제권판결

잃어버린 증서를 법원이 공고한 뒤(공시최고) 판결로 그 증서를 무효로 하고 권리를 되살려 주는 절차(제권판결).

## APPENDIX B

###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1. 자본시장연구원, 「2026년 자본시장, 1960년대에 머문 투자자 권리 보호: 미수령 주식 및 사채권자집회 제도 개선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26-16호, 2026.7. 명의개서대행회사 국회 제출자료를 표로 수록. 원 제출 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표의 값은 2차로 썼다.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fid=29096&fgu=002001&fty=004003>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fid=29096&fgu=002001&fty=004003>)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2. 이데일리, 「이 불장에...배당금도 안 찾아간 주식 3400만주 쌓였다」, 2026.2.9. 오기형 의원이 금융위원회·예탁결제원 등에서 받은 자료 보도. 2차.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587526645348880>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587526645348880>)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3.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시행 2026.9.10, 법률 제21044호(2025.9.9 일부개정). U-LEX(법률우주) 전재본 경우. 1차. <https://www.ulex.co.kr/law/partial?params=dHlwZT0xJmlkPTAwMTcwMiZqbz00NjQtMiZkYXRlPTk5OTk5OTk5>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보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2011년 개정 반영, 연혁 확인용)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2692&cseq=778935](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2692&cseq=778935)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4. 상법 제64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2692&cseq=778333](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2692&cseq=778333)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8455&type=sogan&key=40](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8455&type=sogan&key=40)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본. 1차.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55413&type=part&key=23](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55413&type=part&key=23)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7. 금융감독원 파인,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1차.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032>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8. 금융투자협회,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안내. 1차. [http://www.kofia.or.kr/brd/m\\_153/list.do](http://www.kofia.or.kr/brd/m_153/list.do)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관리체계 강화, 2026.9.28. 2차(뉴스핌·한국보험신문·더뉴스 경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0214>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7>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7>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10. 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2024.11.11. 2차(뉴시스·아주경제 경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1\\_0002953982](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1_0002953982)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https://www.ajunews.com/view/20241111101509979>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11.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찾아주기(2024년 말 기준). 2차(헤럴드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 경유).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7987>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771606642200080>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17518976>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12.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현황(2025년 6월 말 기준). 2차(서울경제·매일경제 경유).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XCLKBIP>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XCLKBIP) ·  
<https://v.daum.net/v/20250916055400184>  
 (https://v.daum.net/v/20250916055400184)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13. 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휴면예금 지급 실적, 2026.1.21. 2차(아주경제·EBN 경유).  
<https://www.ajunews.com/view/20260121093133310>  
 (https://www.ajunews.com/view/20260121093133310)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365>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365)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14.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9.16) 안내, 2019.6·8. 2차(이데일리·한국금융신문 경유).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902806622584696>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902806622584696)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1906071812206483f09e13944d\\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1906071812206483f09e13944d_18)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1906071812206483f09e13944d\_18)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4조의2. 1차.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4조의2>)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각주

1. 자본시장연구원이 대행회사 세 곳의 국회 제출자료를 표로 옮긴 값이다. 원 제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데일리 (2026.2.9)가 같은 합계(약 3,434만주)를 전해 두 자료를 맞춰 봤다. 두 자료 모두 주주 수는 적지 않았다. [자료 1·2]
2. 상법 제464조의2 제2항. 현행 조문(시행 2026.9.10, 법률 제21044호)을 U-LEX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조문은 기산점을 적지 않는다. [자료 3]
3. 세 곳 주주명부 전체의 고령 주주 수다. 미수령 주주만의 수가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표의 연령대별 값을 연구소가 더했고, 이데일리로도 같은 값을 전했다. [자료 1의 표2·자료 2]
4. 원 제출 문서는 확인하지 못해 2차로 썼다. 2025년 대행회사별 값은 이데일리가 전한 값과 맞는다. 예탁결제원 약 3,356만9,000주, 하나은행 46만6,000주, 국민은행 30만5,000주다. 다른 연도의 주식 수와 배당금 값은 두 자료로 맞춰 보지 못해 실지 않았다. [자료 1·2]
5. 발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세 매체가 같은 값을 전했다. [자료 9]
6. 예탁결제원 발표를 두 매체 이상 보도로 확인한 2차 값이다. 출연액은 헤럴드경제·세계일보가 전했다. [자료 11·12]
7. 자본시장연구원 원문은 대행회사가 '배당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보관하다 회사에 반환한다고 적었다. 이데일리는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을 발행회사로 돌려준다고 전했다. 조문에는 기산점이 없다. 발행회사 귀속을 정한 정관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1·2·3]
8. 전자등록 의무·주권 실효 공고는 전자증권법 제25조·제27조, 특별계좌는 제29조. 시행일은 보도로 확인했다. [자료 5·14]
9. 주주명부 열람·발급, 분실신고, 사고신고, 공시최고 신청, 공시최고 신청사실 신고, 제권판결, 재발행 신청. 절차 순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글의 표3을 따랐다. [자료 1]
10.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신설. 연혁은 영문 번역본으로 보조 확인했다. 5년 기한이 신설 때부터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3]
11. 예탁결제원 2024.11.11 발표, 두 매체 보도. [자료 10]
12. 서민금융법 제2조제3호, 제40조, 제45조. 영문 번역본 기준. [자료 6]
13. 서민금융진흥원 발표, 두 매체 보도. 건수 기준이라 사람 수와 다르다. [자료 13]
14. 상법 제64조. [자료 4]
15. 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2026년 말까지 고치는 방식이다. 보도 기준. [자료 9]

16.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선 과제다. [자료 1]

17. 보도 기준. [자료 9]

18. 공시최고 관할 확대와 소액 주식 간이  
권리회복 특례.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선  
과제다. [자료 1]

19. ① 미수령 주주 수 ② 발행회사로 넘어간  
배당금 누적액 ③ 넘어간 뒤 다시 청구하는  
경로 ④ 증권 휴면자산 가운데 미수령 몫 ⑤  
배당금 5년의 기산점을 정한 규정 ⑥  
대행회사가 해마다 새로 맡는 배당금의 크기.  
자본시장연구원 글과 금융당국 발표·  
예탁결제원 캠페인 보도가 찾아본 범위다.



|        |                                                                                                                                                                                                                                                     |
|--------|-----------------------------------------------------------------------------------------------------------------------------------------------------------------------------------------------------------------------------------------------------|
| 제목     | 배당금 청구권은 5년, 미수령 주식에는 같은 시효가 없다                                                                                                                                                                                                                     |
| 시리즈    | 넥서스 리서치 2026_103 · <b>NR-2026-103</b>                                                                                                                                                                                                               |
| 발행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30일                                                                                                                                                                                                                          |
| 자료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
| 인용 형식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배당금 청구권은 5년, 미수령 주식에는 같은 시효가 없다」, 넥서스 리서치 2026_103(NR-2026-103), 2026.9.30. 영구 링크 · <a href="https://nexusfmi.com/research/unclaimed-shares-dividends-deadline">https://nexusfmi.com/research/unclaimed-shares-dividends-deadline</a> |
| 수정 이력  | 없음                                                                                                                                                                                                                                                  |
| 누리집    | nexusfmi.com                                                                                                                                                                                                                                        |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